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정비

-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2022.3.1.부터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이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됨

■ 주요개정 내용

- 『초·중등교육법』 주요 개정 내용(2021.9.24.개정 / 2022.3.1.시행)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기능(법 제32조)	현행	개정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법인요청시 자문	자문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자문	심의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학교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임용·평가 등	제외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제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법제처심사중 / 2022.3.1.시행 예정)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주요 개정 내용
제45조(수업일수)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일수, 휴업일 등 운영, 학생 안전대책 수립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舊 “자문”)
제47조(휴업일 등) 제1항, 제3항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舊 “자문결과”)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3항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사유없이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음.(舊 “자문”)
제106조의 4(규제의 재검토) 제1항	

○ 『사립학교법』 주요 개정 내용(2021.9.24.개정 / 2022.3.1.시행)

구분	시행일	조항	주요 개정내용
학교 운영위원회	'22.3.1.	제29조 제31조	학교 회계의 예·결산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수화 (舊 “자문 ”)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중 일부인 학교 예·결산에 관한 심의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에 추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예·결산에 관한 사항만 심의사항으로 변경된 것이 아님

○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2018.07.)

- 위원의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삭제

■ 행정사항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전 정비 완료(2022.2월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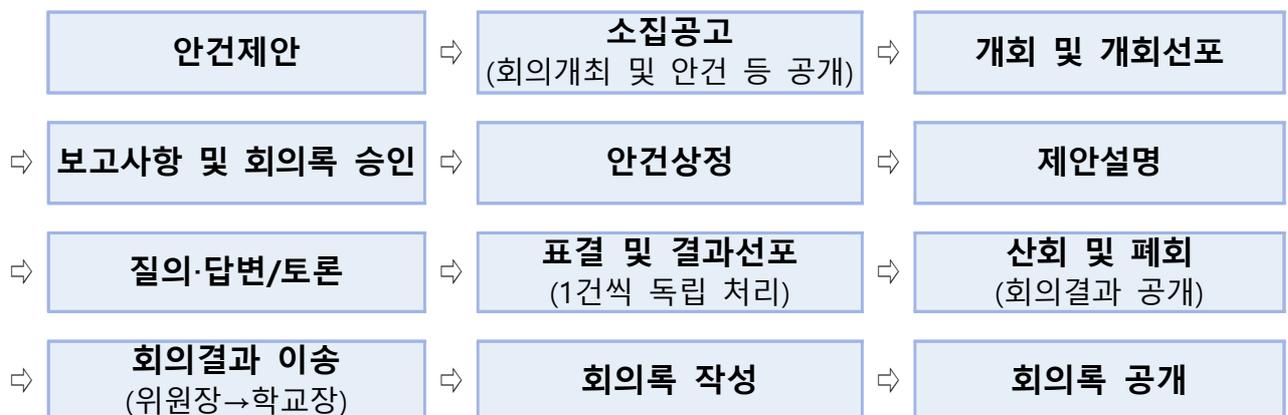
○ 심의에 따른 안전 처리 절차 준수

- 학부모 및 학생 의견수렴 등 심의사항별 운영 절차 확인

- 학교운영위원회 간편업무 매뉴얼 및 원클릭자동서식 프로그램 활용

※ 참여협력담당관-14318(2021.11.18.) [학교운영위원회 행정 업무경감을 위한 개선사항 안내]
[\(서울학부모지원센터-행정정보-학교운영위원회-업무자료실 참조\)](#)

【회의진행순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알림

1. 관련

- 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460호, 2021.9.24.)
- 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461호, 2021.9.24.)

2.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소속 기관(학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
- 공 포 일 : 2021. 9. 24.
- 시 행 일 : 2022. 3. 1.
- ※ 대한민국 관보(2021.9.24.),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 붙임 1. 법률 제18460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 법률 제18460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학운위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3. 법률 제18461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4. 법률 제18461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학운위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각실과, 시도교육청, 국립부설유초중고, 국립특수학교

주무관	이세봄	지방교육행정사 무관	김민수	기획팀장	09/30 박진하
-----	------------	---------------	------------	------	---------------------

협조자

시행 기획팀-2461 (2021. 9. 30.) 접수 참여협력담당관-11587 (2021. 9. 30.)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 (어진동) / www.moe.go.kr
 전화 044-203-7085 /전송 044-203-7079 /lsb333@korea.kr /공개

방역은 시민적 거리두기로부터 청렴은 부패 거리두기로부터

2022.02.08 02:50 참여협력담당관 강현진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 ③ (생략)</p> <p>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p> <p>1. (생략)</p> <p>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u>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u>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p> <p>3. (생략)</p> <p>⑤·⑥ (생략)</p> <p>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② (생략)</p> <p>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u>----- ----- -----.</p> <p>3. (현행과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1. (생략)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⑤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

④·⑤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제1항제4호, 제21조제7항, 제22
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하고,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
조의3제3항, 제70조의4, 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
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교육부장관 유 은 혜

● 법률 제18460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4호 중 “학교의 장”을 “학교의 장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21조제7항제1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을 “6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년”을 “6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32조의3제2항 중 “7명”을 “15명”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를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제53조의2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조제2항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2항 중 “임용권자에게”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로 한다.

제66조의2의 제목 중 “재심의 요구”를 “재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원징계위원회에”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

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제63조·제65조 및 제66조제1항·제3항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7조 중 “제62조의2”를 “제62조의2, 제62조의3”으로, “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제3항, 제66조의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지 및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로 한다.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4 전단 중 “제57조”를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교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에 제70조의5부터 제7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 사무직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없는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청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사무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제65조,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

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3.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4.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5.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제5장에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2조의4(청렴의무)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각각 제73조의2 및 제73조로 하고, 제73조(종전의 제73조의2)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을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6조의2제5항 전단(제70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0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7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72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4호, 제21조제7항,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제3항, 제70조의4, 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서 송부 및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제1항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개전형 중 필기시험 위탁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3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제53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임원의 당연퇴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원으로 재임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

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특정 성(性)의 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함(제17조제5항 신설).
- 나.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에 관할청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제20조의2제1항제4호).
- 다.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임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제21조제7항, 제22조 및 제22조의2 신설).
- 라.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함(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
- 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 상한을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교원, 직원, 학생이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함(제32조의3).
- 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함(제53조의2제11항 신설).
- 사.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외부위원에 학부모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제6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아.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제62조의3 신설).
- 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제66조제2항).
- 차.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에 제3항 신설).
- 카.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4).
- 타.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5 신설).
- 파. 관할청이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6 신설).
- 하.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7 신설).
- 거.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

도록 함(제72조의3 신설).

너.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한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제72조의4 및 제72조의5 신설 등).

<법제처 제공>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32조(기능) ① <u>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u><단서 신설></u></p> <p>1. ~ 14. (생략)</p> <p>② <u>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u></p> <p>③ (생략)</p>	<p>제32조(기능) ① <u>학교에-----</u> <u>-----</u> <u>-----</u> <u>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u></p> <p>1. ~ 14.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③ (현행과 같음)</p> <p>【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u>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국회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장관 유은혜

● 법률 제18461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공립 학교에”를 “학교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제48조의 제목 “(학과 등)”을 “(학과 및 학점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정책을 연구·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변경 명령”을 “변경 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② 관할청은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고발하여야 한다.
- ④ 관할청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바,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며,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함(제32조).

나.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함(제48조의2 신설).

라.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전 안내

1. 관련: 교육부 기획팀-2461(2021.9.30.), -3122(2021.12.14.)
2. 우리부에서는 사립학교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당초 자문 기능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 기능으로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2021.9.24.개정, 2022.3.1.시행)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월중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법제처 심사중임
3.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에 안내 하오니 2022학년도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예: 조례·정관 등 개정)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시도교육청

주무관 이새봄 행정사무관 김경화 기획팀장 02/07 박진하

협조자

시행 기획팀-323 (2022. 2. 7.) 접수 참여협력담당관-1529 (2022. 2. 7.)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 (어진동) / www.moe.go.kr
전화 044-203-7085 /전송 044-203-7079 /lsb333@korea.kr / 공개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461호, 2021. 9. 24. 공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바꾸는 후속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초·중·고 및 특수학교장은 매 학년 190일 이상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45조).

나.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때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안 제47조).

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57조의2).

라. 사립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 발생 우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음. 이 경우 관련사항과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관할청은 예외 사유 없이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63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안 제106조의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각각 “심의를”로 한다.

제57조의2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63조제2항 후단 중 “자문”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문결과”를 “심의 또는 자문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문”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한다.

제106조의4제1항 중 “운영위원회 자문결과”를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결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5조(수업일수) ① (생 략)</p> <p>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u>심의 또는 자문을</u> 거쳐야 한다.</p> <p>제47조(휴업일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u>심의 또는 자문을</u> 거쳐 정하되,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p> <p>② (생 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u>심의 또는 자문을</u> 거쳐야 한다.</p> <p>④ (생 략)</p>	<p>제45조(수업일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심의를</u> ----- -----.</p> <p>제47조(휴업일 등) ① ----- ----- ----- ----- ----- <u>심의를</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 <u>심의를</u> ----- -----.</p> <p>④ (현행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연 락 처	(044) 203 - 7083